

잠깐!!

종자, 모종, 잘라낸 가지의 양도 및 해외 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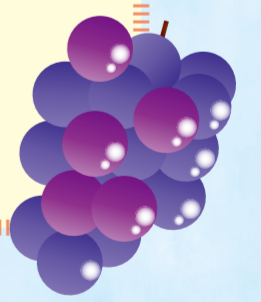
신품종은 귀중한 지적재산입니다

등록 품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**종묘법 위반**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

NEW!

☞ ‘등록 품종’, ‘해외 반출 금지’ 등의 표시가 있는 종묘(풀꽃 및 야채의 종자나 모종, 과수에서 잘라낸 가지, 콩류 등)를 해외에 반출하려고 했다.

☞ 육성자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품종의 종묘를 늘려 타인에게 양도했다.



해외 반출 금지의 표시 예시

노린 옐로우 (등록 품종)
해외 반출 금지 (공시<농수성HP>참조)

고의로 종묘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

벌금 **최고 1천만엔 이하**
(법인은 최고 3억엔 이하)

징역 **최고 10년 이하**



문의처

농림수산성 수출 · 국제국 지적재산과

☎ 03-6738-6443

등록 품종은 농림수산성 품종등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▶

<https://www.maff.go.jp/j/shokusan/hinshu/>

